[참고] PCT 국제출원의 우선권회복 제도 PCT 규칙 26bis.31

- 1. 우선권 주장의 회복 적용 기준
 - 가. 적용 규칙: 26의2.3(a) and 49의3.2(a)
 - 나. 두 가지 회복 기준:
 - 1) Due Care: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우선권기간 내에 출원하지 못한 경우
 - 2) Unintentionality: 우선권 내에 출원하지 못한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
 - 다. 우선권 주장의 회복을 유보하지 않은 청은 두 가지기준 중 하나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, 지정관청은 국내법에 따라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
- 2. 수리관청에 의한 회복 (규칙 26의3.3)
 - 가. 조건:
 - 1) 수리관청에 신청해야 함
 - 2) 기한: 우선권 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
 - 3) 출원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의 설명 (statement of reasons) 제출
 - 4) 선언 혹은 다른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
 - 5) RO/IB의 경우 수수료는 무료
- 3. 수리관청에 의한 회복 거절의 효력(규칙 26의2.3)
 - 가. 국제출원일에서 14개월 이내에 출원된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은
 - 나. 수리관청에 의해 회복되지 않아도 무효로 간주되지 않음 (규칙 26의2.2(c)(iii))

1 / 3

인마이제이 프라이빗룸

¹ PCT 에는 특허출원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우선권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회복 제도가 있습니다.

- 다. 국제단계에서 기간 계산의 기초가 됨
- 라. 그러한 우선권 주장이 국내단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보증되지 않음
- 4. 우선권 주장 회복의 국내단계에서의 효력(규칙 49의3.1)
 - 가. "due care" 기준에 기초한 수리관청의 회복은 모든 지정관청에서 유효
- 나. "unintentional" 기준에 기초한 수리관청의 회복은 해당기준을 적용하는 지정관청에서만 유효
- 다. 수리관청의 회복은 수리관청에 대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음: 지정관청은 제한된 검토 가능
 - 라. 수리관청의 회복 거절은 지정관청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 않음
- 5. 우선권 주장 회복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관청
 - 가. 규칙 26의2.3(j): 수리관청으로서 국내법과의 상충을 통보한 관청
- 나. 규칙 49의3.1(g): 지정관청으로서 수리관청의 결정에 따른 효력이 국내법과 상충함을 통보한 관청
 - 다. 규칙 49 의 3.2(h): 지정관청으로서 국내법과의 상충을 통보한 관청

특허법 시행규칙 제103조(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)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을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.

- 1.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우선권주장이 조약규칙 4.10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해당 우선권서류의 기재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를 특허청장에게

2 / 3

제출하여야 한다.

-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주장의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u>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우선권</u>주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 - 1. 조약규칙 4.10(a)(ii)에 따른 선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
- 2. 우선권주장에 관한 기재내용이 제106조의6제1항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기재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국제출원일이 우선일부터 1년을 경과하였으나 그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
-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권주장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정은 제 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한 것으로 본다.
 - 1. 제10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일 것
 - 2.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일 것